

202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202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CONTENTS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법률자문단	6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8
디자인공지증명	10
디자인표준계약서	12
디자이너경력관리	13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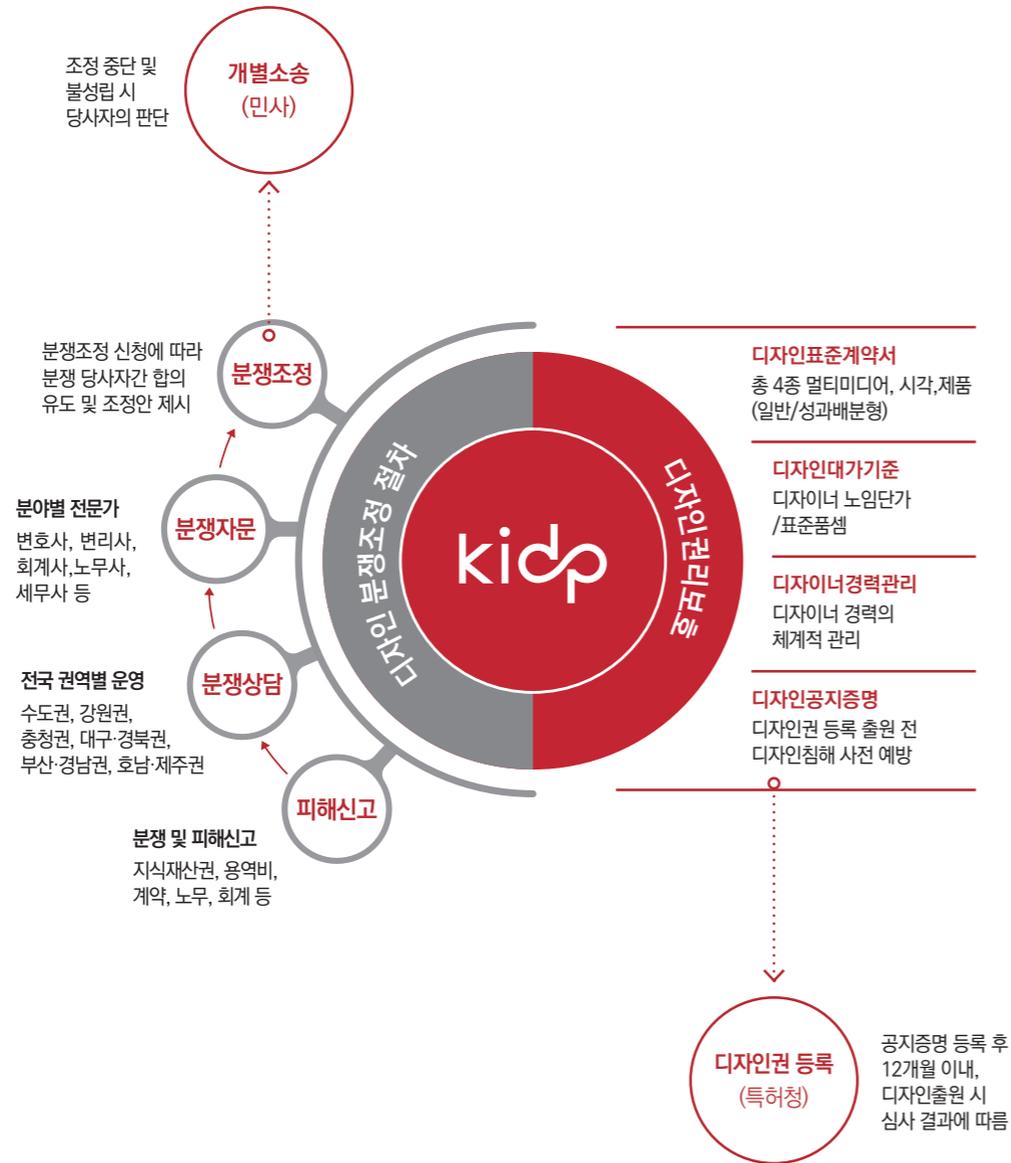
지식재산권 관련	15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63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79
노무 및 회계 관련	85
기타 및 특수사례	97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사례 찾아보기	105
---------	-----

디자인권리보호사업 운영체계도



drights.kidp.or.kr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경력관리

01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 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업계 관련자

지원 내용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과의 1:1 맞춤상담 서비스

신청 방법

전화, 우편, 방문접수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수도권) | 1577-4964 | ko-dia@daum.net
- 광주디자인진흥원(호남·제주권) | 062-611-5053 | law@gdc.or.kr
- 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경남권) | 051-950-1221 | jyhan@dcb.or.kr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대구·경북권) | 053-740-0038 | kjw@dgdp.or.kr
- 대전디자인진흥원(충청권) | 042-930-7826 | eun@didp.or.kr
- 강원디자인진흥원(강원권) | 033-252-5500 | law@gidp.kr

온라인신청

웹사이트 drights.kidp.or.kr 내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신청서 접수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048 | drights@kidp.or.kr

운영체계



자문절차

- | | | |
|---|--------------------------|--|
| 1 | 피해사례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 신고센터 • 법률상담 신청(신청방법: 전화, 우편,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 |
| 2 | 피해 유형별 DB화 및 상담연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내용 파악 후 피해 유형별 분류 DB화 • 담당 자문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 연결 |
| 3 | 신고서 검토 및 법률상담 진행 자문위원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검토 • 상담 신청인과의 1:1 상담 진행(전화 상담/필요시 방문 상담 가능) |
| 4 |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 자문위원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자문위원 1:1 상담 및 자문 종료 후 신고센터에서 법률상담카드 제출 |
| 5 | 자문의견 전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센터 담당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지원 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

지원 내용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

신청 방법

웹사이트 drights.kidp.or.kr 내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

디자인피해신고센터 및 법률자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각 지역 디자인진흥원 및 디자인산업연합회가 공동 운영하는 디자인피해 신고센터 및 법률자문서비스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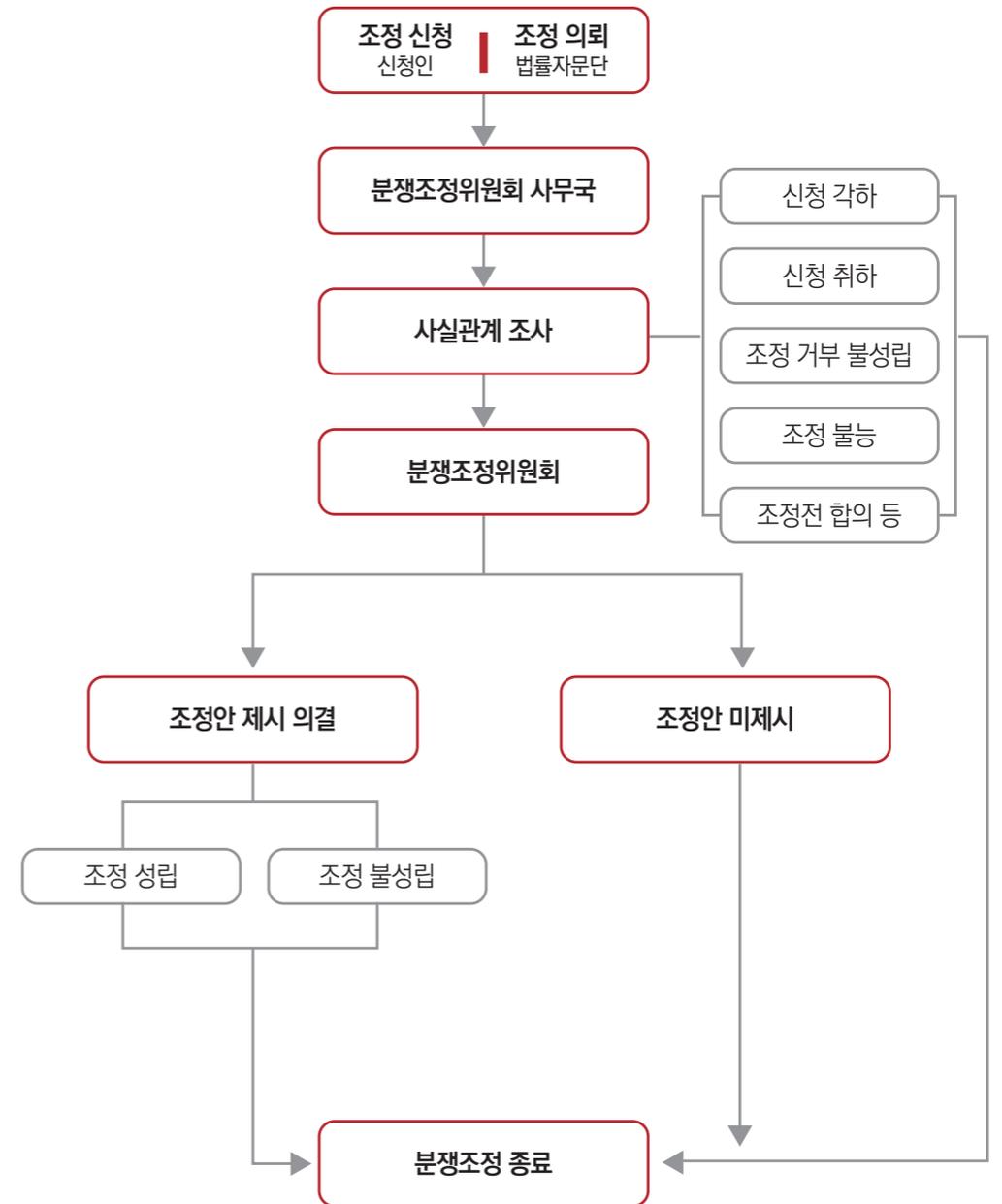
디자인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되고 피신청인에게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조정 안내서류 등이 함께 송부됨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048 | drights@kidp.or.kr

운영절차



03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공지증명은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디자이너 등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공지증명의 장점

- ① 디자인출원 등록 전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여, 개발 과정 중 창작된 디자인 안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의 차이점

구분	디자인 등록	디자인공지증명
목적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공지 사실 증명
처리 기간	출원 후 6개월 내외	짧음(1~3일)
권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 9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배타적 권리 없음 •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인이 출원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 실제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온라인 제출 • 실제 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 비용: 94,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75,000원 • 연차등록료: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20,000원(대학생 이하 무료) • * 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보호 기간	존속 기간 20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048 | drights@kidp.or.kr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절차



04 디자인표준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과 관련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 중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평등한 계약 관계

'갑'과 '을'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 명시



계약서 4종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피해예방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용역 단계별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048 | drights@kidp.or.kr

05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경력관리란 디자이너 개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시 디자이너 경력관리 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경력관리 신청 절차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이용 수수료 체계

입회비
30,000원

디자이너경력관리
최초 신청 시
1회 납부

변경 수수료
건당 3,000원

신규 신청 이후 경력 수정
및 추가 시 변경 신청에 대해
건별로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
1부당 3,000원

신규 신청 시 1회 무료 발급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1부당 수수료 납부

문의처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designcareer.kodfa.org | 02-3445-5198 | dsncareer@hanmail.net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공개디자인 #저작권양도 #무단사용 #디자인권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물 권리
#저작권 침해 #외주 시 저작권 #디자인 출원 #상표권 출원 #상표권 등록 #디자인 카피의
기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보장 #디자인 카피의 기준 #유사디자인에 대한 법적대응
#디자인등록 침해 #저작권 #제품디자인 #특허권 출원 #디자인권 등록 #등록료 납부 #
손해배상 #원본 파일 저작권 #지식재산권 출원 #법적보호 #저작물 침해 #디자인 도용 #
서체 저작권 #폰트 #서체 #지식재산권의 소유 #상표등록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존속기간 #계약 #비밀유지계약

01 온/오프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해당 기법을 배워 작품을 제작하고 싶다는 지속적 문의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공예품을 개발하여 온라인사이트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제작 기법과는 다르나 형태 및 미감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핸드메이드로만 제작이 가능하며, 직접 개발한 디자인 및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운영 중,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본 기법을 배워 본인이 작품 제작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강한 거절 의사와 저작권 침해는 불가하다고 고지하였으나 지속적 문의에 온/오프라인 클래스를 중단하고 해당 기법에 대해 일절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 등록에 관해 여러 변리사분들과 상담하였으나 이 경우의 디자인과 기법은 자연 형태이며 모든 제작물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권 등록 진행이 반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공예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이 등록 불가한 상황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의 작품은 그 결과물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여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특허 출원 진행보다는 노하우(영업비밀) 유지 및 관리가 더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제법특허(제조방법)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는 있으나, 제법특허는 등록받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렵고, 제3자 회피설계도 용이하며, 18개월 후 모두 제조방법이 특허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작품은 독특한 귀하의 제조 방법과 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더 실효적인 보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조과정 중 꼭 필요한 부품은 디자인권을 확보해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02 홍보자료를 양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양사의 홈페이지에서만 내려달라고 합니다.

사례경과

당사는 고객사 프로젝트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였고 고객사의 프로젝트 사진자료를 홍보자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당사 또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고 있었는데, 최근 고객사로부터 이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사진촬영자, 즉 귀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권 중 일부인 지적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데, 이를 양도하였는지는 용역계약에서 정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해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양도 조항이 없고 반대급부로 제공한 용역대금이 이를 포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로 보지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소송이라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주장하는 고객사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고객사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고 본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권리행사는 양수인인 고객사 측에 있는바, 비록 상업적 목적이 아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사용도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행사 제한을 받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에 정함이 없다면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3 대기업의 디자인 무단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대기업의 연락을 받고 행사용 굿즈디자인 시안을 고객사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때 양사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는 해당 굿즈디자인을 채택하지 않았고, 당사에 디자인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당사는 대형마트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제품을 당사가 제안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굿즈에 담아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사는 위 굿즈를 제조/납품한 적이 없으므로 고객사가 당사의 디자인을 유출하여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 납품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귀사가 창작하여 제안한 굿즈 디자인을 그대로 상품화하여 제작 판매 중인 고객사를 상대로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처벌을 위해 형사고소 등을 하고 싶을 것인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귀사에게 위 디자인에 대한 권리(지식재산권)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귀사의 권리로는 디자인권과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귀사는 다른 사람들이 귀사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또는 그 상품)을 제조, 유통(수입),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자, 유통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법률적인 권리주장 방법으로는 먼저 고객사에게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침해(사용)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즉시 그 중지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경고장)을 작성하여 보내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붙인 스티커에 기재된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그러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의미를 위와 같이 오해하거나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싫어하여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반응하는 내용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04 디자인 출원을 완료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타사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당사는 제품디자인을 한 제품에 대해 작년부터 제작을 하고 있는데, A사에서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제품디자인은 디자인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A사는 본인이 디자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사가 제품을 내놓은 것은 올해이고 A사는 당사의 제품을 작년 부터 꾸준히 봐왔었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동일합니다. 당사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찾고 싶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당사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바, 보호의 범위는 디자인 출원시 제출된 도면(육면도 또는 사진)을 기준으로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디자인등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제재를 통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침해죄에 해당(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등록권리자가 침해가 일어난 장소 또는 침해자, 권리자 주소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등을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자사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용이 창작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등록디자인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분쟁을 표면화하기보다는 출원일 이후 침해자의 침해사실을 채집하여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5 중국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하여 3배 더 낮은 가격에 판매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경과

최근 중국에서 저희 자사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글로벌 판매 플랫폼에 3배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한국, 미국, 유럽, 영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마무리하였고, 유사 디자인을 중국과 일본에서 디자인 등록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중국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 글로벌 판매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당사의 등록디자인(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침해업체는 중국 업체로 중국 내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대리인을 통해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판매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등록디자인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자체 판단 후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있으니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06 회사 형태로 영입을 제안받아 브랜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과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호 간 지속 불가능하다는 합의 하에 그동안 작업한 디자인의 저작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A 업체로부터 B라는 회사 형태로 영입을 제안받아 C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없고, 당사가 A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A사에서 당사에게 인력제공, 투자유치 등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첫 투자자본금 일부와 사무실 제공을 제외하고는 도움을 받지 못하여 상호 간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당사가 A 업체에 있으면서 작업했던 제품디자인에 대해서는 A 업체에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당사가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의 디자인 저작물이 A 업체로 귀속되는 것인지, 만약 A 업체가 먼저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당사와 A 업체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사가 A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한 디자인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A 업체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등 당사와 A 업체와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청인이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도 아니므로 당사와 A 업체와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당사가 작업한 디자인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원 저작자인 당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고,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발생될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 등이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등록을 하더라도, 무효심판 청구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이 최종 무효화 처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등록디자인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분쟁을 표면화하기보다는 출원일 이후 침해자의 침해사례를 채집하여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7 비밀프로젝트가 아닌 업무상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고 개인 포트폴리오에 사용하였는데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사례경과

저는 A 회사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하여 일하고 2021년 12월 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저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개인 PR 용도로 저작권이 A 회사에 있음을 밝히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인쇄용이 아닌 72dpi(인터넷용)로 올렸는데, A 회사는 저작권 침해라며 갑자기 오늘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포트폴리오로 올린 그림은 A 회사의 비밀프로젝트가 아니라 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림이고, SNS에도 게시되어있고, 홈페이지, 스마트스토어 등에 판매되어 올라가 있는 공개프로젝트 그림입니다. 또한 처음 저와 A 회사와의 계약시부터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사장이 저에게 의뢰하는 형식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구두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A회사는 지금 제게 피해보상과 업무상 저작물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한다는데 신고를 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게시물은 다 내린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의견

귀하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려면, 우선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그림에 대하여 위 저작권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해당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물품의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그림 자체만으로 하나의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그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 언급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귀하의 그림은 저작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귀하의 그림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일단 귀하가 회사의 동의 없이 그림을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것은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포트폴리오에 올리는 것이 그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소지 또한 높다고 봅니다.

귀하의 그림을 디자인으로 볼 경우, 이는 귀하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귀하가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08 외주를 통해 최종 시안을 디자인 제품화하였을 때 저작권 귀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상품화될 제품의 아이디어 및 스케치를 프리랜서 혹은 다른 소규모 디자인 기업에게 아이디어이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아이디어 및 스케치를 제품화하였을 때, 그 제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나,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 법인 등의, ㉡ 기획 하에,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고, 계약 또는 근무 규칙상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였을 때 '종사'란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9 특성화 소재를 이용한 민속 가구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당사의 소속 디자이너가 전통 한국 민속 가구를 모티브로 별도 특별 가공 제작된 착색 아크릴로 반닫이, 사방탁자, 소반을 디자인 및 제작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가구와 현대적 소재인 아크릴과 별도로 새로 디자인한 장식들을 융합한 상표도 등록 진행 중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전통 가구 원형으로 전시 홍보 유통 시 해외 시장에 알려짐에 따라 국내외에서 복제품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속 가구 형태이지만 특성화 소재를 적용한 이러한 제품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본 제품은 저작권 대상은 아니고, 디자인 대상입니다. 저작권에 공예가 있습니다만, 일품성(하나의 제품만 존재)이 있어야 하는데, 본 제품은 다수 개의 공예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2. 본 제품은 공예 물품이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디자이너가 2022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서울리빙디자인페어 2022에서 전시하였기 때문에 아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 후 추후 입증자료 제출 가능)
3.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 등록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디자인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실물 제품을 보여주거나, 사진 또는 도면(캐드, 3d, 도면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본 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 본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여 보호받으려 할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하는 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10 상표 보호 방법과 공동출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비롯하여 디자인 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및 카페업으로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때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공동출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등록가능성 검토>

출원 대상 상표의 사전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 출원 제안드립니다.

기념품, 디자인공예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류 구분 제35류 출원 및 카페업 관련하여 상품류 구분 제43류 출원으로 총 2건의 상표출원 자문.

<출원절차안내>

출원 -> 심사-> 공고 -> 등록

(10년간 독점 사용권 부여/ 10년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반 영구적으로 상표권 보유)

<상표권의 공유-공동출원인>

상표권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동출원인은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 각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권리자인 경우, 등록상표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권 설정하는 경우와 같이 처분 등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공동권리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공동권리자 가운데 일인이라도 상표권의 갱신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미디어 기업들의 로고를 집약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례경과

클라이언트로부터 미디어 기업들의 로고를 집약하여 디자인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미디어 전문잡지의 표지에 사용하였을 시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저작권법 제28조의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1. 기업의 로고는 저작권법 제2제 15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기업에 따라서는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상표로 등록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며,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5조까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위 제한 이외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사의 질의는 미디어 잡지의 표지에 다수의 미디어 기업의 로고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잡지의 표지는 그 자체로 보도 또는 비평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잡지의 성격을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며, 법 제28조의 취지의 또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안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이 발행하는 잡지에 타 미디어 기업의 로고 디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디자인 카피의 법적 제재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며 궁금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8마디를 카피의 기준으로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카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디자인의 경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캐릭터 디자인, 순수 미술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 등으로 대별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은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 미술 디자인 또는 단순 캐릭터 디자인은 저작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있어서, 침해 이슈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심미감을 주는 것이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리적 동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또한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슷한 심미감을 주는 것으로서 그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체로 형상(outline) 및 모양(shape)가 같거나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보게 되는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 중 그 일부는 공지·공연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같다고 하여 무조건 유사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 일부 구성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도 결국 전체로 보아 비슷하다고 할 경우에 유사하다고 하여 침해 이슈에 걸리게 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쉽게 말해 "원저작물을 보고 베낀 것 또한 이와 다름없다"라고 본다면 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거성'은 그 원저작물을 보고 했다는 것을 말하고 (원저작물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완전히 무관하게 창작한 것이면 의거성이 깨집니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창작 과정에서 그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를 회피 가능한 방안은 이미 공공연하게 널리 있는 디자인을 활용하거나 저작권 무료인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3 지식재산권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례경과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처럼 제품 패키지 디자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출원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최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방안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지 않고 저작권협회 등록만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 하셔도 무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등록은 타인 또는 타 업체가 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모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는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디자인등록은 해당 패키지 디자인에 인쇄된 모양, 이미지, 패키지 디자인 자체의 형상 등에 대해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실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권리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법인이나 개인 중 어느 쪽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3. 별도의 디자인등록 없이 저작권 등록만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패키지 디자인이 미술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다투어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 가능성이 디자인권만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패키지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4 기존 조형물이나 캐릭터를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여 제작할 경우 디자인권 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기존 조형물이나 캐릭터를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여 제작할 경우,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한지와 타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등록가능성 검토>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조형물, 캐릭터, 자연물을 픽셀아트를 활용하여 다른 스타일로 제작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가능하지 여부는 기존과 대비하여 심미감에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한편, 픽셀아트는 새로운 창작물(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및 저작권 등록신청이 바람직한 상표출원 자문

<타 권리 침해 우려>

픽셀아트 특징상 단순화와 픽셀로의 변형이 필수적이므로 원저작물·원형과는 미감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존 조형물, 캐릭터, 자연물을 픽셀아트를 활용하여 다른 스타일로 제작하더라도, 기존 저작물과 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저작권이 없는 원물을 모티프로 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가미하여 디자인 개발하고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받되, 저작권이 있는 원물을 모티프로 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EYWORD | 유사디자인에 대한 법적 대응

강원

15

당사의 제품을 카피한 비슷한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의 법적 대응 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혹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저의 제품을 카피한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 제90조, 제91조)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법 제92조)

-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② 디자인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디자인권자의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 제113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14조)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손해액의 추정(법제115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죄(법제220조)

-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법조문에 의거하여, 만일 상대방이 귀하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은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첫째,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침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둘째, '무슨 소리냐 디자인권과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상이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둘째의 경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디자인 침해가 확실시 되면 상기 법조문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과 형사 기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EYWORD | 지식재산권 침해, 디자인등록 침해

광주

16

디자인 침해 대응 방법 및 경고장 발송

사례경과

신청인의 자사 상품 '카니멀라이프' 차량용 테이블 부분디자인 등록 완료 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경고장 발송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 침해는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디자인이 동일·유사한 경우 침해가 성립됩니다. 본 건의 경우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고, 상대방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토대로 경고장 송부 및 별도로 부정경쟁 행위를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심판이나 소송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

KEYWORD | 저작권

17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무단 사용에 대한 합의금액 조율과 법적 분쟁 여부

사례경과

조감도 제작 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미술 저작품(구름 이미지)을 직원이 사용하여 제작. 이 경우에 무단 사용 배상 요청에 대한 합의 금액 조정 방법과 법적 분쟁으로 갔을 경우 대처 방법 문의.

자문위원 의견

저작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인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저작물 사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통상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벌금을 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데, 이는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따라서 저작권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침해한 저작물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저작물 사용으로 신청인이 얻은 금전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권장하며, 현재 코로나19 등 사회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해당 저작물의 거래금액 이상으로는 합의가 쉽지 않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서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 등도 부담하게 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현재의 협상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KEYWORD | 제품디자인

광주

18 피혁제품의 디자인 출원과 공모전 출품 시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경과

피혁제품의 디자인 출원 관련 및 공모전 출품 시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문위원 의견

피혁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혁제품은 형상 및 모양을 갖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단, 디자인권은 디자인 출원을 통해 등록되어야지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모전 출품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공시행위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모전 출품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공시행위(공모전 출품)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시예외주장을 통한 디자인 출원은 가능하지만 공시행위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9 폐현수막을 활용한 캔버스 원단 제작, 폐원단 인테리어 소재 제품의 특허 출원 문의

사례경과

폐현수막을 활용한 캔버스 원단 제작, 공정 등 폐원단 코팅 방법, 폐원단 인테리어 소재 만들기 제품의 특허 출원 등 문의

자문위원 의견

폐현수막을 활용한 캔버스 원단 제작, 공정과 같은 코팅 방법은 기술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개량기술도 특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등록할 경우, 동일한 기능을 포함하는 타인의 제품에 대해서는 독점배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코팅 방법이나 제조 방법을 단순히 조합한 경우에는, 특허요건 상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 등록은 어렵습니다.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 제품 디자인 출원 후 디자인등록 및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디자인권 소멸에 대한 문의

사례경과

제품디자인 출원 후 디자인등록 및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디자인권 소멸에 대한 문의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등록 결정이 된다고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청에 최초 3년 치에 해당하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 79조). 즉,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3년 치의 등록료가 아니라 등록을 한 이후에는 1년 단위,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료의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인 추가 납부 기간에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상대의 일방적인 부정경쟁방지법, 사진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의 대응 방안 및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문의

사례경과

신청인은 의류 등의 해외 직접구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최근 대구지역의 의류 업체로부터 신청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자신들의 상품과 유사하고, 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상품 사진이 자신들의 상품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타인 상품 사칭 및 품질 오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진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임. 이에 대응 방안과 사실이 아닌 사항에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문의

자문위원 의견

사실관계 청취 결과, 신청인이 취급한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있거나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사회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재한 사진도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 포착 등 사진저작물로서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이 과다 산정되었으므로 대폭 감액될 필요가 있으며, 신청인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얻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정신적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고, 위자료의 인정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위자료 청구 액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2 디자인 의뢰를 완료 후 폐업된 기업에게 원본 파일을 제공해야 되는 건가요?

사례경과

2020년 12월에 로고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용역의뢰를 받고 진행을 마무리하였는데, 클라이언트가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2021년 2월에 용역비를 받기위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1년 가까운 시간의 소송 기간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조정으로 합의를 하고 저도 많은 금액을 포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 조정된 금액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고, 저에게 11월 말에 조정된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원본 파일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을 쓰지도 않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며 돈을 못 준다고 했던 사람이며, 저도 원본 파일에 대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조정을 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본 파일을 보내주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준비서면과 소송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되는 견적서에는 로고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원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원본 데이터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게는 상대방에게 로고 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위 소송 중에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수 차례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황에서 신청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원본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현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업사이클링 제품의 지식재산권 출원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현재 대구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플라스틱 폐자원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한 제품 중 두 가지 정도를 디자인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페플라스틱 중 HDPE, PP 재질로 만든 칫솔·볼펜꽂이입니다. 모양은 지구를 안고 있는 공입니다.

이 제품은 버려지는 페그림책의 표지를 이용해서 만든 클립보드판입니다. 그림책의 표지는 단단한 하드커버 재질이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클립보드판은 잘 깨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에 비해 종이에 코팅을 입힌 그림책 커버는 더욱 단단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페그림책의 표지에 별도의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므로 디자인이 가미된 표지를 클립보드판의 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페그림책의 표지를 활용하여 클립보드판을 제작할 경우 페그림책의 디자인을 지운 후 페그림책의 표지를 클립보드판의 판으로 재활용하는 선에 그쳐야 하며, 페그림책의 표지에 가미된 디자인을 클립보드판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24 자사가 개발한 시제품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자문요청 기업은 IOT 장비, 소프트웨어, 위치기반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아래는 요청기업에서 개발한 용접 시뮬레이션 장치의 도면 및 시제품 사진이며 본 기업은 이를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 제품은 용접 시뮬레이션 장치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이며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함.

본 제품은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공지된 디자인들에 비해 신규성이 인정되며, 특유의 수납구조와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창작성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제품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즉, 본 제품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충족하므로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디자인의 출원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업한 도면에서 사시도,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를 추출하여 특허사무소에 제공하거나 상기 도면들에 대응되는 시제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특허사무소에 전달하고 대리인 위임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보임.

25 자사가 개발한 '고래바닥 흠다짐기' 제품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자문요청 기업은 한국 전통의 구들 문화를 보급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아래는 자문요청 기업에서 개발한 '고래바닥 흠다짐기'로 해머 드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이며 현재 이 장비에 대한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한 상태입니다. 이를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 제품은 '고래바닥 흠다짐기'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함.

본 제품은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공지된 디자인들에 비해 신규성이 인정되며, 특유의 수납구조와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창작성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제품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즉, 본 제품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충족하므로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디자인의 출원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업한 도면에서 사시도,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를 추출하여 특허사무소에 제공하거나 상기 도면들에 대응되는 시제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특허사무소에 전달하고 대리인 위임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보임.

26 개발된 금속재 캐노피 관련 디자인에 대해 출원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자문요청 기업인 대림폴리텍은 텐트, 캐노피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기존의 금속재 캐노피 연결부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수지재 연결부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수지재 연결부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 디자인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대림폴리텍의 캐노피 연결부재는 기존의 제품들과 그 동작원리가 유사하여 기술적 진보성 흠결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대림폴리텍의 캐노피 연결부재는 기존 제품들에 비하여 형상이나 모양 상의 특이성이 인정되어 디자인을 통한 보호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디자인 출원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볼 것을 제안함.

27 해조류를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들의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례경과

경북 청년 지원 사업에 합격하여 2022년 9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사업명은 '재재공작소'로 폐종이를 사용하여 수제종이를 만드는 공방 겸 굿즈를 판매하는 사업체입니다. 제가 사는 고장인 영덕을 대표하는 동해안 바다 해조류 바다 쓰레기를 이용하여 공방을 대표하는 영덕 굿즈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외하고 싶은 건 대개 껍질을 넣은 수제종이를 다른 분들이 도용할 수 없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또한 해조류로 염색한 수제종이, 해조류를 넣은 종이, 대개 껍질을 넣은 그림톡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굿즈를 저만의 특허받은 제품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특허법상 정의하며,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통하여 특허권 확보가 가능함.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특허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임. 신규성은 특허출원 발명이 종래기술과 다르다면 인정되는 특허요건으로 대부분 출원 발명의 경우에 인정되어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진보성은 특허출원 발명이 종래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는 특허요건으로 특허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요건임.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발명의 구성이나 공정에서 종래기술과는 다른 구성 또는 방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화된 내용을 통해 종래기술과는 현저히 구별되는 효과가 설득력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대개 껍질을 넣은 수제종이의 경우에 관련 기술을 검색해 본 결과, 대한민국 출원 특허인 출원번호 제10-2008-0054753호 '친환경 생분해성 시트 및 이의 제조 방법' 등이 검색되며, 선행기술에서는 갑각류의 껍질을 생분해성 시트에 사용한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어 수제종이에 대개 껍질을 넣는다는 구성만으로는 진보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진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개 껍질을 활용하여 수제종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 구성이나 공정을 발굴하거나, 대개 껍질이 수제종이에 잘 부착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구성이나 차별화된 공정 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대개 껍질을 기존의 방식으로 분말화한 후 기존 방식의 수제종이 제조 공정 과정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현재 상담인은 대개 껍질을 활용하여 수제종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종래와는 차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존속기간이 정해지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출원 및 등록한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특허권의 단점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을 통한 보호를 추진할지, 노하우 유지를 통한 보호 전략을 마련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KEYWORD | 저작물 침해

경북

28 수상 이후 표절 시비로 인해 수상 취소 후 상금 회수 연락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례경과

자문 신청인은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48회 중소기업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중소기업소장상을 표절 시비로 인해 취소한다며 상금을 회수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문을 구해 증거와 요청자료들을 보냈는데,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는 별다른 회신 없이 디자인 수상 이력을 삭제하고 검색도 안 되게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표절 시비가 된 타 작품은 본 적도 없는 작품이며, 개인 블로그에 낙선작으로 되어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2017년 '몽블랑 신사의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유사 작품의 수상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자문 신청인은 주최 측의 처사에 너무 화가 나고, 심사위원인 교수들의 권위로 '표절이니 끝이다' 라고 처리한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표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두 작품 간의 '접근성'을 밝히는 일임. 그러나 현실에서 표절을 판별할 때 이 '접근성'을 밝히기도 어려우며,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더군다나 예술의 영역인 미술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을 표현의 가장 우위에 두며 감상하는 감상자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의 다른 영역보다도 표절 여부를 더 판별하기 어려움. 대법원은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미술저작물이 소재로 삼은 동물과 그 의성어, 색깔, 물건이 동일 또는 유사할 뿐 그 표현이 상이한 때에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당소의 견해로는 신청인의 입장과 같이 표절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표절이라는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작물 표절에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과 전람회라는 특성상 그 근거 자료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그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소에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인의 창작에 대한 열의는 식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KEYWORD | 지식재산권 침해

대구

29 개발된 로고가 적용되어 설치·운영 중인 사주·운세 자동판매기가 타사에게 내용증명 요청을 당했는데 디자인 보호 방법이 있을까요?

사례경과

당시 A사는 디자인 전문회사이며 사업방식 확장의 일환으로 21년 하반기부터 '무릎팍보살'이라는 무인 사주·운세 제품을 개발하여 창원점에 '무릎팍보살'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2년 1월 '그분이 오시다' 회사(이하 B사) 측으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건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B사 측에서 주장하는 디자인등록을 대비해 볼 때, 분리된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와 전체적인 외곽을 대비하는 경우에도 '그분이 오시다'와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무릎팍보살' 제작 당시 B사 측의 등록디자인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 어떤 요소도 모방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에 향후 영업적인 명예와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서로 간에 원만한 처리를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자문위원 의견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디자인의 유사 범위 폭을 넓게 보는 대법원 판례 등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실시디자인은 상단에 기와를 올린 전체적인 형상 측면에서 B사 측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신청인의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로 특허심판원에 신청인의 실시 디자인이 B사 측 디자인(등록번호 제30-114108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있고, 둘째로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B사의 해당 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과는 형상은 다르나 상단에 기와를 올린 캡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의 캡슐 자동판매기의 단품과 상단 기와 구조물의 합하는 것은 창작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신청인의 실시 디자인의 실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30 자사 개발된 로고 출원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신청기업은 식품 소분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제작한 로고 1, 2를 차 종류 등에 출원할 경우, 등록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표장 1(한글 '복판상회')의 경우, 검색된 상표 '한복판'과 가운데라는 관념이 유사하므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장 2(한글 '복판상회' + 한자 '福販')의 경우, 가운데라는 관념이 아니라 '복을 판다'라는 관념을 형성하므로 앞서 언급한 상표 '한복판'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복판상회와 발음이 유사한 상표가 검색되지 않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러므로, 신청기업의 로고 중에서 두 번째 로고를 출원하실 것을 제안함.

31 어패류 및 해조류 관련 자사 로고 브랜드 출원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CK물산 상표 등록 관련하여 변리사와 상담하여 가능 여부 확인하였으며, 이에 상표출원을 위한 심화 자문을 요청합니다.

상표명: 길찬바다

상표구분: 어패류, 해조류 가공/건조식품에 대한 상표로 사용 예정

상표등록 방안: 디자인 도안 없이 '길찬바다' 문구 자체로 등록 예정

자문위원 의견

상술한 디자인법률 자문 상담을 토대로 신청인은 아래의 '길찬바다' 상표를 젓갈, 냉동생선, 보존처리된 생선, 보존 처리한 어패류, 해조가공식품, 생선 등(29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상표출원 진행을 요청함.

[상표 견본] 길찬바다

이에 첨부서류와 같이 2022년 07월 28일 자로 국내 상표 출원을 진행하였음.

관인생략

출원번호통지서

출원 일자 2022.07.28
 특기사항
 출원 번호 40-2022-0140540 (접수번호 1-1-2022-0790735-54)
 출원인 성명 김성욱(4-2015-012342-9)
 대리인 성명 신진현(9-2013-001029-1)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통보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
 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공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지식재산제도

32 해조류를 이용한 수제종이 및 굿즈 출원이 가능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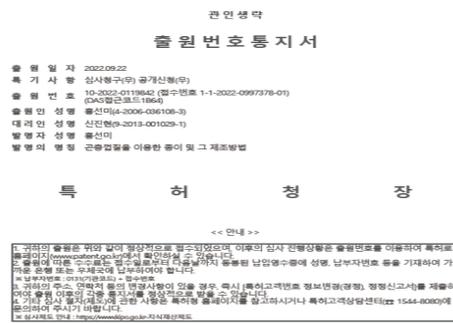
사례경과

경북 청년 지원 사업에 합격하여 2022년 9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사업명은 재재공작소로 폐종이를 사용하여 수제종이를 만드는 공방 겸 굿즈 판매하는 사업체입니다. 제가 사는 고장 영덕은 관광지이지만 딱히 영덕을 대표하는 기념품이 없어 고민하던 중, 영덕 대게와 동해안 바다 해조류 바다 쓰레기를 이용하여 공방을 대표하는 수제종이 영덕 굿즈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게 껍질, 해조류를 활용한 수제종이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을 위한 심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과 발명 상담 후 아래와 같이 국내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음.
[발명의 명칭] 곤충껍질을 이용한 종이 및 그 제조 방법

[대표도] / [출원번호통지서]



33 자사가 개발한 배수자재 디자인 출원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홍원테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제품(배수자재)을 현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덮개와 몸체로 구성된 루프 드레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출원을 신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지난 2022년 06월 13일, 디자인법률 자문상담 법률 카드에서 신청인이 배수자재와 관련한 제작한 제품에 대한 특허등록 및 디자인등록 법률 자문을 문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신청인이 문의한 배수자재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형상의 차이가 존재하나 기존 제품 대비 차별화된 기술 구성 및 차별화된 효과는 미비하므로 특허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워 보여 디자인권 확보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4 차량용 탈취제 소매업의 개발된 자사 로고 출원이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주식회사 설린은 상표출원을 위한 심화 자문을 요청합니다.

상표명: TANKU 탄쿠
지정상품: 가정용 탈취제 소매업, 차량용 탈취제 소매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등
상표등록 방안: 디자인 도안 없이 'TANKU 탄쿠' 문구 자체로 등록 예정

자문위원 의견

청인은 아래의 'TANKU 탄쿠' 상표를 가정용 탈취제 소매업, 공기탈취제 소매업, 차량용 탈취제 소매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등 (35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상표 출원 진행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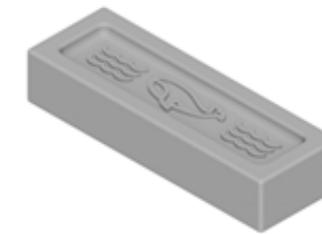
TANKU
[상표 견본] 탄쿠
이에 첨부서류와 같이 2022년 08월 26일자로 국내 상표 출원을 진행하였음.



35 젠가용 블록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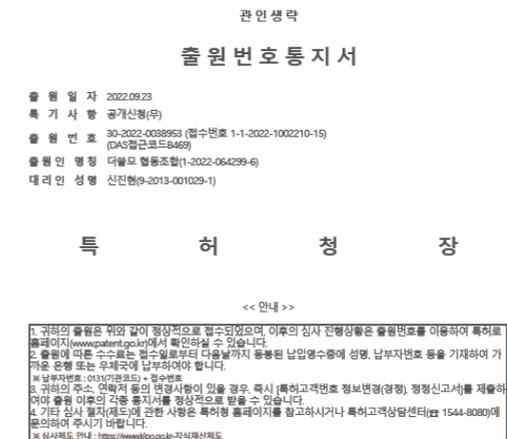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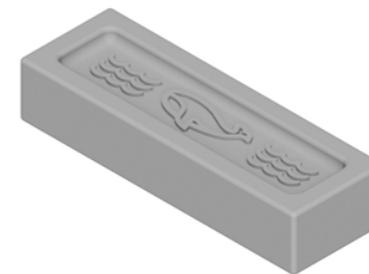
사례경과

더 쓸모 협동조합은 국내 디자인 출원을 위한 심화 자문을 요청합니다. 국내 디자인 출원 대상 물품은 젠가에 사용되는 블록이며, 블록의 상면과 하면에는 각각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고 함몰부에는 다양한 도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법률 자문상담을 토대로 신청인은 아래에 도시한 젠가용 블록에 대하여 국내 디자인 출원 진행을 요청함. 이에 첨부 서류와 같이 2022년 09월 23일 자로 국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였음.



36 디자인 제안 발표 및 계약 미체결 이후 유사 디자인 공개 사례 대응 방법

사례경과

업체의 디자인 요청에 따라 당사는 계약서 없이 1차 디자인을 선진행하여 시안 3종을 PT 발표 등과 함께 업체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 담당자분이 디자인 PT 발표 중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업체 측은 대체로 준비한 디자인에 만족하였으며 세부 견적서 요청 후 견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구두 협의와 다르게 견적 부분이 비싸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대해 거절을 했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서 유사 디자인을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기사화했고, 당사가 제안한 디자인 형상과 100% 동일 하진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계약의 성립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구두상 합의도 계약의 합의로 볼 수 있으나 계약이 확정됐다고 판단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성립을 위한 PT 발표 정도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본 건은 그 이후 상대방이 거절하였다면 계약성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PT 과정에서 공개된 디자인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나 비밀유지무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정도라면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또는 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분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7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사례경과

인쇄물 제작을 의뢰받고 당해 인쇄물(PDF 파일로 작성)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인쇄물은 적법하게 구매한 서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성했습니다. 위 인쇄물을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서체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위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또는 PDF파일로 변환한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서체 그 자체에 하나의 독립적인 특성이나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만 극히 예외적으로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이 건에서 해당 기업은 당시 인쇄물 작성 시에 정당하게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서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떤 저작권 침해가 없습니다.

기관에서 위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과 관련이 없으며, 더구나 기존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하여 변환한 것 자체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체나 도안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이용한 경우로 [침해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01. 5. 26. 선고 99다 50552 판결 및 대법원 2001. 6. 29. 선고 23246] 판결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안이나 서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법하게 구매한 서체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8

공동개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사례경과

협력업체와 반려동물 관련 브랜드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식재산권 보유 문제가 확실하지 않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현 단계에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그동안 생산한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누구 것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지식재산권 보유 문제는 공동개발 업체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는 공유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공유는 향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 시 직접 생산의 경우엔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측이 갖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권도 창작자가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단계에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그동안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9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사례경과

- 당사는 지난해(2021년) 거래처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E-카탈로그를 그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A산업협회의 회원증을 게시하였는데, B서체가 사용된 회원증이었습니다.
- 거래처는 B기업이 개발한 B서체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불법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요청의 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당사에게 거래처가 이익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거래처에서 제공한 회원증을 게시했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가 맞나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A협회에서 서체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불법적으로 회원증에 사용한 것이 일차적으로 A협회의 잘못이라고 인정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서체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잘못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하기와 같은 답변을 조언합니다.
“귀사에서 지적하신 바에 대하여는 본사는 알 수 없었던 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A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의 일부 단어 서체에 문제가 있었던 점으로 인식되며, 본사는 당연히 해당 협회에서 라이선스를 얻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원증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보였어야 하나, 협회의 회원증으로 당연히 라이선스가 제공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0

상표·지식재산권 등록 가능성

사례경과

방향제 개발 및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특정 용어를 포장 상자에 사용하는 것이 A제과 회사의 과자 제품인 B와 유사하여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는 디자인 등록이 불가한 디자인으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을 들고 있어, 포장용 상자에 과자 제품명 'B'를 표시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제과 회사의 과자 제품명 'B'는 제30류인 과자류 등에 등록되어 있고, 최근 해당 과자 제품명을 상표 출원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포장용 상자에 'B'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의 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A제과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선 특허법원 2019허2967 판결에서 주지·저명한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 바가 있으나, 그 경우에는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가방원단으로 주지·저명 상표의 지정상품(직물지, 의류, 가방)과 매우 유사한 경우이고, 본 사례는 포장용 상자와 과자류이므로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

곰돌이 O 소재 디자인 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저촉 여부

사례경과

당사는 2022년 원저작권이 소멸된 곰돌이 O를 소재로 주류의 제품 패키지(이하 '이 건 패키지')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원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지만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

이 건 패키지는 라벨이 표면에 부착되는 맥주 제품의 용기로서, 용기 전체로는 물품류 제07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가정용품)의 01군(도자기, 유리 제품, 접시 및 그 밖의 유사한 용품)에 속하고, 라벨에 한정하면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 재료, 교재)의 08군(그 밖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류 제07류와 제19류에 대해 유사 디자인을 검색하였으나 유사 디자인이 검색되지 않으므로 이 건 패키지가 국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표권 침해 가능성

이 건 패키지가 속하는 상품류는 제32류(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일음료 및 과일주스; 시럽 및 음료용 제제)이고, 유사상품군은 G0602(맥주, 맥주용 맥아 줍)로 판단됩니다. 검색 결과 아래 그림 2와 같이 제32류에서 디즈니엔터프라이즈, 인크.가 권리자인 등록상표가 검색되나, 지정상품이 과일시럽, 레모네이드, 사과주스, 아몬드 우유 음료, 탄산수 등 유사상품군 G0290, G0503, G0704 등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류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권 침해도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저작권 침해 가능성

이번 Public Domain에 속하는 저작권은 1926년 발간된 저작물에 한하기 때문에 다른 저작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림 1의 디자인이 1926년 저작물에 속하는 것이라면 원저작권 소멸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저촉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1호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건 패키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그 용기, 포장으로 사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기업이 또는 일반인이 이 건 패키지를 이전에 알지 못하였다면 그 저촉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42 디자인 제작물 내 폰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사례경과

당사가 납품한 디자인 제작물이 PDF의 형태로 납품처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고, 그 파일에 당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폰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서체 회사 법무팀에서 해당 저작물에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거래처에 납품한 디자인 제작물 내용 중 특정 기관의 CI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CI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폰트로 작업 되어 PDF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기존의 저작물에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져 그 자체로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상담자의 주장대로 로고 부분에 사용된 서체가 저작권사의 서체라면, 이는 서체 프로그램 자체가 아닌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된 저작물, 즉 '서체 도안'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3 유명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경과

클림트나 고희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 작가가 사망한 지 50년 이상 되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39조에 의하여 그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클림트나 고희 등 유명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어간 경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만료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미적 감각이 있는 디자인 창작물인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4

본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되었습니다.

사례경과

특정 개인이 최근 SNS를 통해 본사의 제품(의류)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해당 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우선, 타인이 셔츠 및 원피스를 포함한 의류에 대한 디자인을 도용한 상황에서 연관된 지식재산권은 디자인권에 해당합니다. 셔츠나 원피스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디자인권이 발생할 것이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았으면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셔츠나 원피스에 대해서 별도의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디자인보호법)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타인에게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진행한 셔츠나 원피스에 대해서 별도의 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5

상호등록 및 상표등록 시 대도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례경과

상호등록 및 상표출원 건으로 '부산****'를 등록할 경우, '****'와 함께 대도시 명칭인 '부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부산'이라는 명칭은 대도시 명칭으로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는 단어에 해당하며, 대도시의 명칭은 상표법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킬 수 없는 식별력 부족한 단어이므로, '부산'이라는 단어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산', '****' 등의 단어는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부족하여 독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그림 로고를 합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림 로고는 취급하는 제품이나 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피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취급제품을 우회적이거나 암시·강조하는 정도의 그림 로고는 상표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별력 있는 특이한 그림 로고와 합쳐서 출원할 경우는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6 상표권 출원 관련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경과

상표권 출원 관련 최근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그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소정의 거절이유를 가질 경우,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 심사관은 제출된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출원공고 결정을 합니다.

심사관의 의견제출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사관의 견해 변경을 시도하는 의견서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존 등록된 상표 및 기존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다고 지적된 사례이며, 일반적인 심사 관행에 비추어 기존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 여부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심사관의 견해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지적된 것이므로 일부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한다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출원된 상표는, 추후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만일 기존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다면 심사관의 거절이유는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심사 관행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제출에 따라 심사관의 견해가 변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7 비밀유지 계약서 검토 및 회사 지식재산권 침해 시 대응 방법

사례경과

1. 재직자와 기업정보, 기술 등 자사 양식의 비밀유지 계약서 검토 및 법적 효력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재직자가 회사의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등 침해 시 대응 방법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자사 양식의 근로계약서나 비밀유지 계약서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표준 서류에 기반하였으므로 법적 효력은 유효하나, 비밀의 유지를 위한 경업금지 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고 1-2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수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그 이상의 기간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밀유지 서약서 내에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기회비용 손실과 같은 특별손해 부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서약서일 뿐 모든 경우를 대응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향후 분쟁과 재직자가 업무상 저작물인 회사의 디자인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시 사항을 가급적 문서로 함으로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적 용도로의 사용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공공기관의 갑질행위 #디자인 용역비 관련 #디자인 계약 #계약이행 #불공정거래 #계약 #계약파기 #계약금 미지급 #비밀유지계약서 #과거 작업물에 대한 무단 사용 #디자인용역 대금 #미지급 용역비

KEYWORD |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

서울

01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례경과

공공기관 부서에서 당사에 연락하여 디자인 기획을 의뢰하였습니다. 원래 계약부터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은 보고/행정 절차가 까다롭다며 품의를 올리기 위한 기획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작업은 작업대로 신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자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이 100% 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당사가 2개월간의 작업 후 기획안을 전달하자 공공기관은 이 업무가 계약서에 근거한 작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작업 문의, 상담, 업무 요청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별도 비딩이나 제안서 경쟁 작업을 요청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사가 수행한 2개월간의 업무는 꽤 난이도가 있었고, 작업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은 절차가 조금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당사의 업무 결과물을 받아본 후, 공공기관이 변심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부서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과거로부터 이렇게 이행되어 왔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번에 안 만날 것 같으나, 어떤 식으로도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나"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부당함을 굴복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오욕, 억울, 무기력 등을 느꼈고, 과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공공기관과의 과정을 잘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관련 지역기관에 민원제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경고장)을 작성하여 보내길 권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의미를 위와 같이 오해하거나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싫어하여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반응하는 내용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공익 제보나 인권센터에 문의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건의 경우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결과물(기획안)을 제공받은 것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망인데, 기망은 귀사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존재하였어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 부서 담당자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켰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부서 담당자는 예상 계약금액 또는 예정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여부의 판단은 공공기관 내부 규정, 업무 관행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귀사가 설정 담당자를 사기로 고소한다 하여도 귀사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귀사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기에 대한 고소는 센터가 아닌 담당자 개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행위지(센터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가 있습니다. 귀사는 공공기관 부서 담당자의 기망에 의한 또는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요청에 따르느라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공기관 또는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는 귀사의 주소지 또는 공공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모두에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귀사는 공공기관 부서 담당자의 불법행위와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 귀사는 공공기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결과물,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KEYWORD | 디자인 용역비 관련

서울

02 디자인 용역계약 체결, 납품 완료 후 단순변심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A사와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에 관한 디자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와 협의하여 동의 하에 브랜드 네이밍과 BI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계약기간 내에 A사에 납품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문의했더니, A사는 갑자기 네이밍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네이밍 후 BI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밍에 대해 A사의 동의를 받은 후 BI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전날까지 A사 담당자와 수정에 대한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문위원 의견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여기에 구속되어 이를 지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계약서상의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이를 약정해제(해지)사유라 합니다), 민법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를 법정해제(해지)사유라 합니다). 약정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 간에 계약에서 정한 사유면 되지만, 법정해제(해지)사유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해지)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위반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A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귀사와 A사 사이에 용역의 내용과 대금을 합의한 사실, 귀사가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완성한 사실, 즉시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에는 네이밍 및 BI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귀사에 남아있으므로 고객이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문구를 삽입하여도 좋습니다.

03 계약서 없는 디자인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업체를 처음 운영해 가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한 달 전쯤 지인(이하 고객)의 카페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요청을 받은 후 계약금을 받지 않고 작업을 했고, 디자인 비용은 300만원으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디자인 완료 후 3D 도면을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고객은 위 디자인에 대한 캐드 평면도를 요청하였고, 당사는 추가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으로부터 추가 요청사항이 많아졌으며, 디자인이 늦어져 인테리어 시공에 차질이 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추가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기존에 합의한 금액인 300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하여, 당사는 더 이상 진행을 하고 싶지 않아 아예 합의했던 금액조차 받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 피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전문위원 의견

디자인 용역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으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의해 계약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계약의 성립은 인정될 것입니다. 전화나 구두로 오간 내용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기로 한 점과 그에 대한 용역비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의 범위 즉, 3D 도면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는지, 캐드 도면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는지, 기타 이행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도 어렵다고 봅니다.

귀사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고객은 용역의 범위와 납기를 증명하여 귀사가 용역의 범위 중 일부를 수행하지 않았고, 납기를 지연하였다는 계약위반사항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증명의 문제 때문에 고객이 귀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고객이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귀사는 용역대금 300만원은 납기의 정함이 없이 3D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귀사는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으며,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의 내용과 대금 및 납기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으므로 불이행한 것도 없다고 답변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사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 이행하려고 시도한 것은 호의로 한 것이었는데, 고객이 과도하게 요구하여 불응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04 개발된 로고를 예정된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사례경과

이 사건 기업 재단법인(이하 재단)은 2021년 12월경 A 건물에 대한 BI 과업을 디자인업체에 의뢰하면서 과업지시서와 디자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과업지시서는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포함,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권 등)가 양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디자인용역계약서는 최종인도물에 한하여 재단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와 디자인용역계약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재단이 위 BI 과업의 최종인도물을 A 건물이 아닌 B 건물에 활용해도 되나요?

전문위원 의견

보내주신 과업지시서는 그 내용상 이 사건의 디자인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양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고, 과업지시서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지도 않았으며 날짜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만으로 디자인용역계약에 대한 본질적인 구성 부분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디자인용역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자인용역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재단에게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상 최종인도물을 다른 과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단이 최종인도물인 BI를 수정·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인도물의 계약 목적 외 사용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상대방 디자인업체와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5 구두계약 파기, 계약성립 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사례경과

업체가 급하게 포스터 및 배너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최종 용역비를 정하지 않고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안을 업체 담당자와 주고받는 등 일이 진행됐고 완료를 위해 최종 수정사항 등을 1-2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계속 대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상담자(본인)가 금액을 정하여 제시했습니다. 업체도 수금하였다가 바로 몇 시간 후에 당해 금액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이 성립했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에서 중요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급하게 일을 맡아달라고 하여 그에 따라 거의 일주일 동안 일이 진행되었고 일부만 수정하면 되는 정도로 일이 완성된 점, 그 시점에서 최종적인 금액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대방 담당자 사이에 의사가 교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설령 대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 의뢰할 당시에 가격은 나중에 협의하여 정하고 일단 일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일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남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 다만 대가로 제시된 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변호사 선임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소외에서 일단 청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는 법원의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6 계약 파기 등 대응 방안

사례경과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3개의 과제를 하청받았습니다. 3개 과제에 대해서는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나머지 하나의 과제는 50%만 수령했습니다.

A와 B 과제의 경우 진행 중이었고, C 작업의 경우에는 행사작업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거래처가 사용하고 보고서 작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당사에서 C 작업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로 나머지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통지하였는데, 거래처 측에서 이를 이유로 A, B 계약도 해지하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정산하자고 합니다.

당사는 A, B는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A, B 과제에 대해서도 취소하겠다고 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비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 용역비에 대한 5%, 6%의 이자 발생 비용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위 3개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거래처 측에서 C 과제와 관련된 문제를 이유로 나머지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례 3건의 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위 3건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거래처가 C 계약을 이유로 B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거래처에 "B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거래처는 약정된 의무(원고의 제공)를 이행하라."라고 독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령 부당이득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매일 6%가 아닌 연 6%의 비율로 발생합니다.

그 후 거래처 측에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소송 등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거래처에서 소송 등을 진행하면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07 용역 대금 등의 미지급

사례경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될 즈음 거래처에서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시제품 납품을 의뢰받았습니다. 당시 선납금으로 주겠다고 하였으며 발주서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내부 사정이 있다면서 프로젝트 계약의 잔금과 납품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독촉하자 프로젝트 계약 잔금은 결재를 올렸으니 지급될 것이라고 하고, 납품 계약의 대금을 해결하겠다고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프로젝트 계약은 계약의 성립이 계약서로 입증됩니다. 납품 계약도 메일, 납부서, 통화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거래처의 말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보거나, 변제 독촉을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추후 납품 계약 대금의 지연이자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래처가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08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방법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디자인 작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타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자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 조건에 따라 외주제작 시 정보 제공범위

외주 제작업체 활용 시 추가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유무

비밀유지 계약서 유지 기간

자문위원 의견

기술 또는 중요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전개 또는 디자인사업을 진행하며 비밀유지 계약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외주제작을 하는 경우, 사업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기업과 사전에 논의를 통해 본 비밀유지 계약서에 상기 내용을 담아내거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를 참여 시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 계약 기간은 다루는 영업비밀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유행이 짧은 경우는 단기로, 유행이 길거나 미래 사업인 경우는 장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09 1년이 넘도록 잔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잔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A 회사(판매회사), B 회사(금형제작회사)를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제품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제품에 대한 양산까지 성공적으로 끝냈음에도 이들은 1년이 넘도록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B사와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완료 후 B 사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지만 B사는 A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A사에 돈을 청구하라 하였고, A사는 B사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하는 등 서로 대금지불을 몇 달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본인의 사정이 어려워니 돈을 일부 나눠서 지불해주겠다 하였고, 신청인은 A사로부터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 회사 모두 고의적으로 당사의 연락을 피하는 등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계약서가 없음에도 용역대금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위원 의견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서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 53059 판결).

당사가 제시한 증거에 의해 용역대금에 대한 확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B사의 동의하에 디자인 용역을 마무리한 점과 당사가 제공한 디자인 그대로 제품이 양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와 B사 사이에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는 B사에 잔금 지급이 지연된 점에 관하여 잔금에 대한 법정이자(상사 법정이자 연 6%)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사가 잔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당사를 기망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A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A사의 자력, 실제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본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 용역대금의 미지급이 A사와 B사 간에 법적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사에 자력이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 대해 형사상 책임까지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 다이어리 제작 및 납품 대금 미납 관련 내용증명 발송

사례경과

2021년 12월경 다이어리 500부 등 총 1,106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상대방 업체 측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상대방 측에서는 다이어리의 상태가 불량이라는 불만을 제기했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이미 자체 행사에서 납품된 다이어리의 일부 수량을 개봉하여 사용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반품을 한 것임. 이 점에서 신청인은 상대방이 단순 변심에 의한 부당한 조치로 파악하고, 민사소송 및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에 의하고자 함.

전문위원 의견

1차 선행상담(합의 권유)이 이루어진 후 신청인의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사례로, 선행상담 결과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물품 계약은 서면 계약서로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은 아니나, 양 당사자 간에 오간 카카오톡 문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품 계약 체결의 사실은 무리 없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 납품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이고, 상대방이 납품받은 물품을 이미 사용한 것도 신청인이 확보한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물품 일부가 불량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청인에게 다시 제작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신청인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수정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을 구성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EYWORD | 과거 작업물에 대한 무단 사용

강원

11

시민활동을 하며 작업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시민활동을 하며 디자인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디자인의 제작자를 밝히지 않고 작업물을 이용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단체를 탈퇴하고, 구두로 일부분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였으나 몇 년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더불어 제가 허락하지 않은 것들까지 언급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 작업물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작업물을 쓰면 제작자라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우선, 작업물(공예제품)에 대해 귀하가 디자인 권리자나 저작권자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래 법조문과 같이 민·형사상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 제90조, 제91조)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법 제92조)

-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② 디자인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디자인권자의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 제113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14조)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청의 중재를 이용하여도 좋습니다.

디자인은 새로운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출원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디자인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다면, 그것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하면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12

앱 제작 대행 용역비 선지급 이후 시제품을 납기일에 납품하지 않았고, 제작 결과물의 수준 미달에 해당,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례경과

웹제작 대행사와 본사는 2020년도에 계약을 체결 후 전체 계약금액 중 50%의 선급금을 지급함. 이후 납기일에 시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이후 1차 자료를 받았으나 학생의 실습작 수준임. 이에 신청인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전문위원 의견

웹제작 대행 계약 체결 이후 계약 불이행 및 제작 결과물의 수준 미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제출시 첨부 자료에 의하면 상대방이 제기한 잔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신청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이 잔금 청구를 포기하고 쌍방은 일체 채권·채무가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위 계약과 관련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 바, 이 경우에 청구기각과 함께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의 가능성이 높으니, 소를 취하하고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13

거래처와 연락이 중단되었습니다. 용역비 미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례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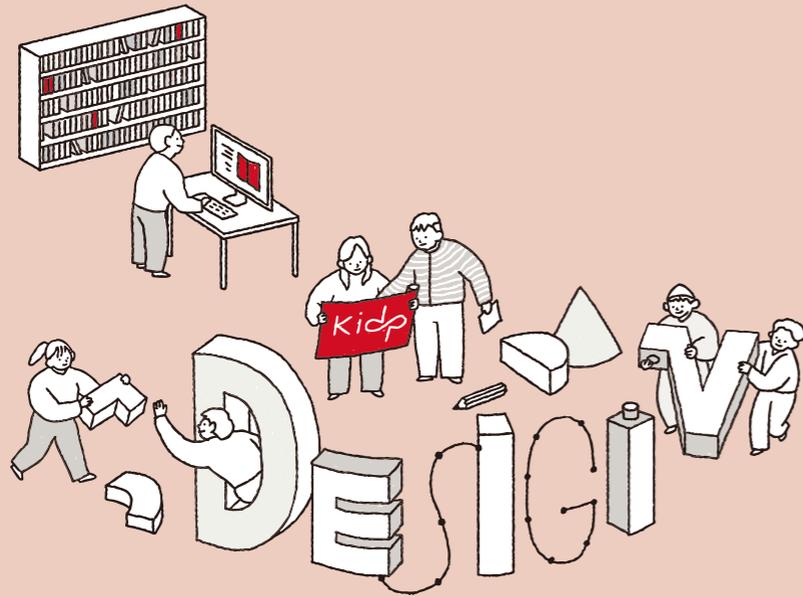
홈페이지에서 상품 판매 시 업로드가 필요한 상세페이지와 웹 배너 작업을 전문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기업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꾸준히 거래하고 있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중단되었습니다. 미지급 용역비 회수 방안이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고,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용역비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 용역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에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 당시 위 거래처가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고소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용역 대금의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2차 저작물 #라이선스 #폰트 #유료 이미지 #저작권 권리보호

01 공공누리 폰트를 수정 후 직접 그려서 새로운 CI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할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공공누리 폰트 중 공기업 폰트를 이용해 당사의 로고(CI)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폰트의 형상을 참고해 당사의 심볼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새로운 로고 타입을 펜 툴로 직접 그려냈습니다. 저작자인 공기업 측에 CI로 활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CI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공기업 폰트를 회사소개 CI 부분에 출처만 표기한다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안내받았음에도, 공기업 측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가 작업한 도안을 회사 로고로 자유롭게 활용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기업에게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서체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귀사가 다운로드한 공기업체 프로그램(파일)을 통해 공기업 서체를 CI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기업 서체의 이미지만을 펜 툴로 직접 그려 귀사의 CI로 사용한 것이므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의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귀사를 상대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고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만약 공기업이 서체를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였다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체를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은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귀사를 상대로 침해(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 여부는 특허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2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상대방 회사로부터 상대방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 및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메일을 받고 확인한 결과, 당사 내 총 5개의 PC에서 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당사에 적정 수량의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 123조, 제 125조 참조).

당사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부 수량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득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그 동안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손해 배상은 없이, 일부 수량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03 서체사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저작권침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례경과

과거 시립도서관에 납품했던 이미지 파일의 리플렛에 사용된 폰트에 대해 폰트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체사 법률사무소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아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유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폰트 파일(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료 폰트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폰트 파일이 저장(임베디드)된 PDF 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명확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근거나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 폰트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료 폰트가 적용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전자세금계산서나 기타 소득 발행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04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이미지를 일부 수정 후 제품디자인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미지에 대한 권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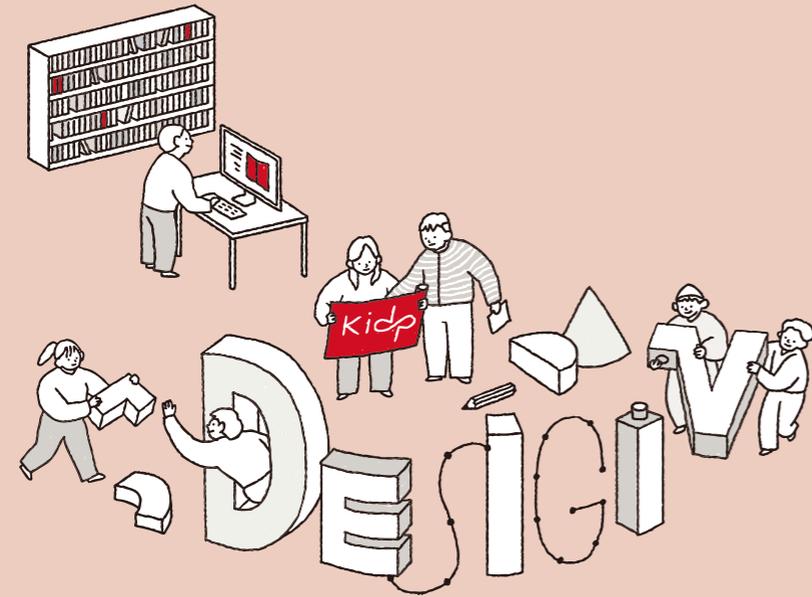
사례경과

유료 이미지 사이트(Shutterstock, Freepik 등)에서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구매한 이미지를 일부 수정 후 제품디자인에 적용하여 출시한 경우, 이 이미지에 대한 권리 및 제품 출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함.

전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는데, 유료 이미지 사이트와 유료 이용 계약에 따른 계약서에 이미지를 일부 수정한 2차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이미지를 일부 수정하여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수정한 이미지가 창작성 등이 있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출원이나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존속기간이 사후 70년인 저작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노무 및 회계 관련



#세금 감면 #성과금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유급연차수당 #연차 #여름휴가 #간이
과세자 #세무 #브랜드별 회계 처리 방법 #근로기준법 #노무 #회계 #정산 #연차제도

01 부가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례경과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전반적인 세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식적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카드 사용은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담당 세무사에서는 카드 이용은 부가세 감면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식사, 문구류 구입, 자동차 유류비, 사무실 난방비 등 거의 대부분을 카드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자산 취득 또는 비용 지출 시 지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등 법에 공제할 수 없다고 정해 놓은 사항 이외에는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보다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스스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공제 받으시기 바람이며,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2 성과금을 통상급여에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문제

사례경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제시한 금액을 맞춰주기 어려워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퇴직 후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임금 기준인지, 평균임금인지 궁금하고, 또한 2년간 총 8회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금이 통상임금인지 궁금함.

자문위원 의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임.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근로개선정책과-4026, 회시일자 2012-08-06).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임.

따라서 연간 8회에 걸쳐 고정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성과금이 지급되어왔다면, 이를 고정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통상임금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통상임금의 의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 직종, 근무 형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계약서에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했다면 지급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함.

03 1년간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이후 연차수당 지급 요청에 대한 자문

사례경과

1년간 근무 후 퇴직금 정산하고 개인 사유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요청에 대한 문의

자문위원 의견

연차유급휴가 지급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4명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04 여름휴가 월차/연차 인정 여부

사례경과

회사 내부에서 일괄적으로 일주일 휴가를 줄 예정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준 경우가 근로계약상 월차와 연차 휴가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여름 휴가에 대해 규정된 사항이 별도로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 휴가 대체 가능하며, 근로계약상 연차 대체 관련 합의 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차 또는 월차는 1년의 80퍼센트 출근 충족 또는 1개월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선 부여된 여름휴가(연차 대체 인정시)를 미리 사용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연차 발생 조건 미충족 퇴사 시 초과 사용분 공제동의서를 별도로 받아두어 차후 임금 지급시 활용 가능합니다.

05 간이 과세자의 세무 상담 및 절세 방법 등

사례경과

올해 창업한 간이과세자 새내기입니다. 기본적인 세무 상식과 세금 신고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신고 기간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에 대해 다음 해 1월25일까지 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 상 10% 부가세액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며 매입 금액의 0.5%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기타 창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세무 자문

사업용 계좌 개설(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 결제 필요), 사업용 카드 국세청 홈택스 신고, 주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가 필요함. 임차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관련하여 적격 증빙 미수취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 인정이 불가능함. 다만 임차료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함.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미용실, 백화점 등으로의 지출)은 사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06 신규 브랜드 런칭 시 브랜드별 계좌 운영, 세무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례경과

여성 패션 가방 신규브랜드(쇼핑몰)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기존브랜드와 신규브랜드의 계좌 운영, 세무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별로 판매와 구매 및 재고관리를 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도 브랜드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는 것이 경영상 효율적입니다.

1) 계좌 관리 방법

우선 쇼핑몰 매출액이 브랜드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에 입금되어 브랜드별 매출액이 집계되고, 그 계좌에서 브랜드별 매입원가 등을 지출하여 브랜드별 수입과 지출이 해당 계좌에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2) 세무와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쇼핑몰의 판매자료와 통장 입금액을 대조하여 판매액의 입금 여부와 미수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세 신고 시 계좌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면 성실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별 매출액과 원가를 장부에 반영하여 브랜드별 판매 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통비용을 안분하여 브랜드별 순이익 및 기업 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어 판매전략 수립 등 경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07 디자이너 채용 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례경과

당사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디자인 인력을 고용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발생기준)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직원이 4인 이하일 경우와 5인 이상일 경우에 노동법상 적용사항이 달라집니다.

(1)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항 :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가산,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취업규칙은 10인 이상에 적용)

(2) 4인 이하에도 적용되는 사항 : 퇴직금, 유급주휴일, 근로계약서 작성

4인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하여도 직원 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는 직원 입장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을 기피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 채용 즉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채용 면접 이전에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희망 사항을 넣을 수 있는데, 예상 연장근로수당까지 월 급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시급 산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나 법인세를 처리할 회계사무소를 미리 선정 후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8 사직한 직원이 미사용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사례경과

2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근로자가 4인 이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무한 기간 중 5인 이상의 기간과 4인 이하의 기간이 번갈아 있을 경우는, 5인 이상의 기간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기간은 2년이 넘으나 5인 이상의 기간은 10개월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모두 10일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근무 기간에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는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31일이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0일이므로 21일을 초과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본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할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금에 각 9시 출근과 18시 퇴근, 휴게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9시보다 늦게 출근한 것과 18시보다 일찍 퇴근한 날도 많으므로 그런 시간을 합한 것이 연장근로를 한 것보다 많다면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9 비밀유지 계약서, 연봉협상, 사업자의 복지, 퇴직금 등 문의

사례경과

1. 자사에서 진행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재직자 개인이 영리적 사용 및 도용, 공개, 개인 사유의 목적으로 활용했을 때 기업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자 직원 해고 시 대응 방법(회사 재정문제, 직원과의 불화, 직원업무 비효율적인 문제 등)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창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애당초 입사 시점부터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행사 주체가 위 사업장임을 명시하기 바라며, 질의1에서 언급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이직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직금지처분, 민사상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체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이와 같으며 업무능력 부족 등의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 통보 또한 가능합니다. .

10

지원사업 사업비 오집행 금액의 처리

사례경과

지원사업 진행 중 사업비의 외주가공비 금액 일부 금액을 인쇄소에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지원사업비 통장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 놓음으로써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사업비 체크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 잘못 지출된 금액도 다시 지원사업비 통장에 입금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질의1]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의 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세법 34조). 또한 사업비의 경우 선집행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시기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수령한 이후 또는 동일한 날짜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반납(재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2] 체크카드 오집행의 건

회사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반납(재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집행 건이 많은 경우에는 회계정산시 사업비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오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제도

사례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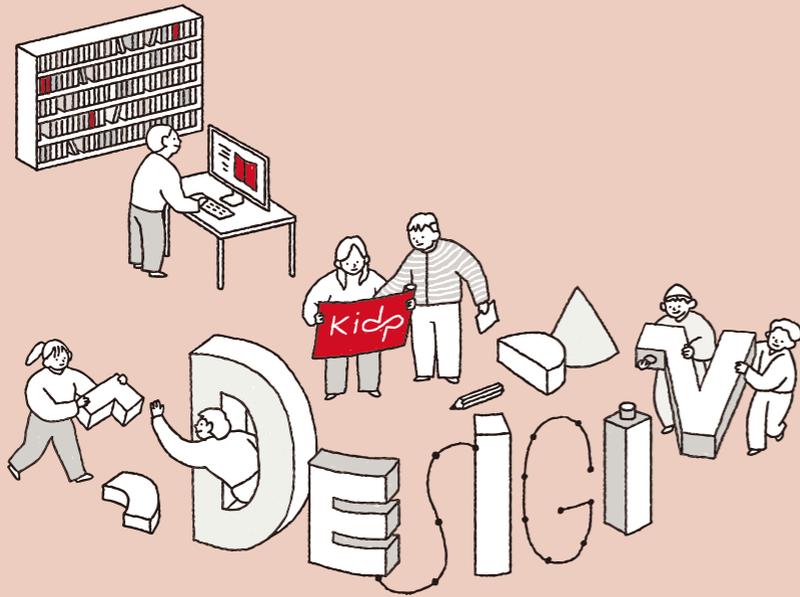
연차의 정확한 의미와 발생,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와 월차(월단위 연차)로 구분됩니다.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발생한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외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차는 연 단위 연차와 월 단위 연차로 나뉘며, 연 단위 연차는 출근일/소정근로일로 계산합니다. 이때 분자/분모에 모두 포함되면 출근에 해당하며, 분자에서만 제외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분자/분모에서 모두 제외되면 소정근로일 제외로 판단합니다.
- ▲법정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부당해고 기간, 예비군, 법정 휴가(출산휴가) 등은 모두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무단결근,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승인받지 아니한 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약정 육아휴직, 해외연수 목적 휴직, 청원휴직, 약정 병가기간, 병가 휴직 등은 모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앞서 출근을 산정에 근거하여 연 단위 연차(출근율 80% 이상), 월 단위 연차(최초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의 막대한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 지정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점 이후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축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를 축진할 경우에는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퇴직급여제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퇴직금의 경우 퇴직 당시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전환이 된 경우만 산입되나, DC형 퇴직금여의 경우 현재 수당 여부와 상관없이 남은 연차를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기타 및 특수사례



#비상업용 목적의 디자인 사용 #퍼블리시티권 #상표등록 #상표분류코드 #한복 디자인
#명품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불합리한 요구

01 비상업용 목적으로 현존작가의 작품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유사하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사례경과

당사는 학생 졸업작품 홍보물로 사용될 비상업용 목적의 레퍼런스 이미지 책자(현존작가의 작품)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유사하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와 유사하게 디자인할 경우, 저작권법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문위원 의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의거와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의거는 타인의 저작물에 접하여, 그것을 자기의 작품 속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란 원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디자인 진행에 있어 레퍼런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거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레퍼런스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인지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므로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포스터 시안은 레퍼런스 자료의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 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와 제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비영리목적의 경우는 공연과 방송에 한정되며, 학생 졸업작품 홍보물로 사용되는 것을 저작권법이 말하는 단순한 사적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원래의 창작자-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의견드립니다.

02 연예인(유명인) 이미지와 실명 태그를 홍보 목적으로 상세페이지에 넣으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사례경과

당사는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홈페이지를 제작해주었습니다. 과거에 제작한 고객사의 상세페이지 제작물 내 연예인(유명인) 이미지와 실명 태그를 SNS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이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우리나라 법에는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판례마다 인정 여부와 근거에 대해 각기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연예인(유명인) 초상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이력, 경력을 알리거나 취업 활동에 이용하는 정도의 포트폴리오 사용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한 영업, 광고, 판매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상표 등록 시 상품 코드 분류에 따라 추가 분류 코드를 넣는 것이 가능한지?

사례경과

상표 등록을 하는데 상품 코드 분류가 나누어져 있어 추가로 분류 코드를 넣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이미 출원한 14류(귀금속) 출원에 35류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문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대한민국의 상표등록 출원은 원칙적으로 1상표 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분류 코드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의 상표등록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상표법은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2개의 상표를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동일한 상표를 2개 이상 상품류로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출원한 14류에 동일한 상표임을 전제로, 35류를 추가하여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출원하였다면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출원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04 패턴디자인을 적용한 전통의상(한복 저고리)의 디자인 출원 가능 여부

사례경과

신청인은 직접 제작 패턴을 적용하여 새로운 한복 저고리를 만들었는데, 고유 전통의상인 한복에 디자인 출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

자문위원 의견

한복 저고리의 경우 기존에 있던 제품과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한 후 등록을 받아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복 디자인은 주로 한 벌의 물품으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며 '키프리스' 사이트의 등록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면은 창작한 디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시도와 육면도, 또는 형상이나 모양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도면이나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05 명품 더스트백 리폼 사진(판매용)을 *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명품에**스사의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응하는 방법

사례경과

명품 더스트백을 리폼하여 가방을 리폼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을 하기 위해 시장성 평가를 하고자 인스타그램에 에르메스 더스트백을 리폼한 사진을 포스팅하였는데, 에르메스사로부터 상표권 권리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며, 이에 원만한 해결 방법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하고자 함.

자문위원 의견

명품 가방의 더스트백을 리폼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해당되는지 여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할 시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에르메스의 표장 부분만 남기고 디자인이나 소재 등 원래 상품과 다른 상품으로 인정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리폼해서 판매하거나 광고 등을 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장(標章)이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과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직접적인 민·형사 대응을 막기 위해 답변서를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계약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와 폭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경과

CI 디자인과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불합리한 요구와 폭언, 협박 등 소위 갑질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당해 용역계약은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이 모두 경과한 점과 현재 귀사가 제작한 상대방의 홈페이지가 운용 중이며 기능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상대방에게서 귀사 직원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는 내용의 폭언, 명확한 근거의 제시 없는 내용의 협박 등은 그 빈도수, 발언의 수위, 문제가 되는 발언의 전후 맥락, 양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원에 대한 형법상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협박 등을 일삼는다면 대화 당사자가 이를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어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01	온/오프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해당 기법을 배워 작품을 제작하고 싶다는 지속적 문의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16
02	홍보자료를 양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당사의 홈페이지에서만 내려 달라고 합니다.	17
03	대기업의 디자인 무단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8
04	디자인 출원을 완료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타사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19
05	중국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하여 3배 더 낮은 가격에 판매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
06	회사 형태로 영입을 제안받아 브랜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과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호 간 지속 불가능하다는 합의 하에 그동안 작업한 디자인의 저작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1
07	비밀프로젝트가 아닌 업무상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고 개인 포트폴리오에 사용하였는데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22
08	외주를 통해 최종 시안을 디자인 제품화하였을 때 저작권 귀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3
09	특성화 소재를 이용한 민속 가구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4
10	상표 보호 방법과 공동출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5
11	미디어 기업들의 로고를 집약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6
12	디자인 카피의 법적 제재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7
13	지식재산권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8
14	기존 조형물이나 캐릭터를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여 제작할 경우 디자인권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9
15	당사의 제품을 카피한 비슷한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의 법적 대응 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0
16	디자인 침해 대응 방법 및 경고장 발송	31
17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무단 사용에 대한 합의금액 조율과 법적 분쟁 여부	32
18	피해제품의 디자인 출원과 공모전 출품 시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33
19	폐현수막을 활용한 캔버스 원단 제작, 폐원단 인테리어 소재 제품의 특허 출원 문의	34
20	제품 디자인 출원 후 디자인등록 및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디자인권 소멸에 대한 문의	34
21	상대의 일방적인 부정경쟁방지법, 사진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의 대응 방안 및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문의	35
22	디자인 의뢰를 완료 후 폐업된 기업에게 원본 파일을 제공해야 되는 건가요?	36
23	업사이클링 제품의 지식재산권 출원 가능할까요?	37
24	자사가 개발한 시제품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38
25	자사가 개발한 '고래바닥 흠다집기' 제품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39

26	개발된 금속재 캐노피 관련 디자인에 대해 출원 가능할까요?	40
27	해조류를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들의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1
28	수상 이후 표절 시비로 인해 수상 취소 후 상금 회수 연락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42
29	개발된 로고가 적용되어 설치·운영 중인 사주·운세 자동판매기가 타사에게 내용증명 요청을 당했는데 디자인 보호 방법이 있을까요?	43
30	자사 개발된 로고 출원 가능할까요?	44
31	어패류 및 해조류 관련 자사 로고 브랜드 출원 가능할까요?	45
32	해조류를 이용한 수제종이 및 굿즈 출원이 가능할까요?	46
33	자사가 개발한 배수자재 디자인 출원 가능할까요?	47
34	차량용 탈취제 소매업의 개발된 자사 로고 출원이 가능할까요?	48
35	젠가용 블록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49
36	디자인 제안 발표 및 계약 미체결 이후 유사 디자인 공개 사례 대응 방법	50
37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51
38	공동개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52
39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53
40	상표·지식재산권 등록 가능성	54
41	곰돌이 O 소재 디자인 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저촉 여부	55
42	디자인 제작물 내 폰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56
43	유명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7
44	본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되었습니다.	58
45	상호등록 및 상표등록 시 대도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59
46	상표권 출원 관련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0
47	비밀유지 계약서 검토 및 회사 지식재산권 침해 시 대응 방법	61

사례 찾아보기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01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4
02	디자인 용역계약 체결, 납품 완료 후 단순변심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65
03	계약서 없는 디자인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66
04	개발된 로고를 예정된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67
05	구두계약 파기, 계약성립 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68
06	계약 파기 등 대응 방안	69
07	용역 대금 등의 미지급	70
08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방법	71
09	1년이 넘도록 잔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잔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72
10	다이어리 제작 및 납품 대금 미납 관련 내용증명 발송	73
11	시민활동을 하며 작업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74
12	앱 제작 대행 용역비 선지급 이후 시제품을 납기일에 납품하지 않았고, 제작 결과물의 수준 미달에 해당,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76
13	거래처와 연락이 중단되었습니다. 용역비 미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77

사례 찾아보기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1	공공누리 폰트를 수정 후 직접 그려서 새로운 CI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할까요?	80
02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1
03	서체사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저작권침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82
04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이미지를 일부 수정 후 제품디자인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미지에 대한 권리 여부	83

사례 찾아보기
노무 및 회계 관련

01	부가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86
02	성과금을 통상급여에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문제	87
03	1년간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이후 연차수당 지급 요청에 대한 자문	88
04	여름휴가 월차/연차 인정 여부	88
05	간이 과세자의 세무 상담 및 절세 방법 등	89
06	신규 브랜드 런칭 시 브랜드별 계좌 운영, 세무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90
07	디자이너 채용 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91
08	사직한 직원이 미사용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92
09	비밀유지 계약서, 연봉협상, 사업자의 복지, 퇴직금 등 문의	93
10	지원사업 사업비 오집행 금액의 처리	94
1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제도	95

사례 찾아보기
기타 및 특수사례

01	비상업용 목적으로 현존작가의 작품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유사하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98
02	연예인(유명인) 이미지와 실명 태그를 홍보 목적으로 상세페이지에 넣으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99
03	상표 등록 시 상품 코드 분류에 따라 추가 분류 코드를 넣는 것이 가능한지?	100
04	패턴디자인을 적용한 전통의상(한복 저고리)의 디자인 출원 가능 여부	101
05	명품 디스택 리폼 사진(판매용)을 *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명품 에**스 사의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응하는 방법	102
06	계약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와 폭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3

**202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2022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4, 2048 (소관부서:기획조정실 법무팀)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202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비매품/무료

03300



9 791192 250465
ISBN 979-11-92250-46-5